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서범수 · 이현승 · 김석기
추경호 · 이종배 · 최은석
김선교 · 고동진 · 김기현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주요한 행사인 이임식·취임식에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

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하,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을 금지하는 전문가의 범위나 기준이 애매하여,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도 선거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으로, “의례적인 범위”를 “의례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 구역단위의 <u>정기적인 문화</u> <u>· 예술·체육행사</u> , 각급학 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u>의례</u> <u>적인 범위</u> 에서 상장(부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 위와 구·시·군단위 이상 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 종친회·동창회,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	자. ----- ----- <u>정기적인 문화</u> <u>· 예술·체육행사와 조직</u> <u>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u> <u>·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u> <u>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u> <u>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u> <u>식·취임식</u> ----- ----- ----- <u>의례</u> <u>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u> <u>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의</u> <u>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u> -----

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
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
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략)

<신설>

3. ~ 6. (생략)

③ ~ ⑤ (생략)

-----.

-----.

차. ~ 파. (현행과 같음)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
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
사,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
(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
인 자)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
위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